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069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1형 당뇨병 환자 당뇨병 관리기기 등 급여화	3

I. 개요

1.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06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미화의원 등 15인
- (2) 제 안 일 : 2024. 8. 22.
- (3) 회 부 일 : 2024. 8.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형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인슐린 분비 능력이 사라진 상태로, 매 순간 급격한 혈당 변화로 인해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매우 큰 고통과 불편이 동반됨.

지난 시간동안 한국소아당뇨인협회 등 여러 단체는 1형 당뇨병을 희귀질환으로 등록하거나 1형 당뇨병이 장애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그러나 희귀질환 등록의 경우 환자 등록수가 2만명이 넘는다는 이유로 매번 거절되어 왔고, 장애인정 또한 현재까지 달성되지 못한 상황임.

이에 1형 당뇨병 환자가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매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전국적으로 30,000명이 넘는 1형 당뇨병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1형 당뇨병 환자 당뇨병 관리기기 등 급여화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1형 당뇨병 환자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이하 “당뇨병 관리기기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판매한 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51조의2(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특례) ① 공단은 1형 당뇨병 환자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이하 “당뇨병 관리기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1형 당뇨병 환자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등을 판매한 자(이하 이 조에서 “판매자”라고 한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공단에 보험급여를 직접 청구할

한 자의 속임수 및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우 공단은 이들에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제96조의4(서류의 보존) ① ~ ③ (생략)

④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한 자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4호에 따른 은닉 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

당뇨병 관리기기등을 판매한 자

④·⑤ (현행과 같음)

제96조의4(서류의 보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청구한 자
및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당뇨병 관리기기등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한 자-----.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 ---

1. 2. (현행과 같음)

3. -----
준요양기관, 보조기기 판매업자 또는 당뇨병 관리기기등 판매업

4. (생략)	자
② ~ ④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검토의견

□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질환의 일종으로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을 특징으로 하며, 고혈당으로 인하여 여러 증상 및 징후를 일으키고 소변에서 포도당을 배출하게 되는 질병임.¹⁾

- 당뇨병은 인슐린 의존성을 기준으로 1형과 2형으로 구분되는데,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세포가 파괴되어 영구적으로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는 질환으로 인위적인 인슐린 투여로만 혈당조절이 가능한 반면,
- 2형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 양이 충분하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질환임. 1형 당뇨병은 전체 당뇨병 환자의 약 10%(약 5만 7천명)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음.²⁾

□ 현행법 제49조³⁾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⁴⁾에 따르면, 건강보험공

1) 서울대학교 병원 홈페이지 의학정보(<http://www.snuh.org/health/nMedInfo/nView.do>) 참조

2) IT조선, 1형 당뇨 급여 확대 움직임...당뇨 의료기기사 기대감, 2024년 9월 3일자 기사

3)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요양비) ①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제9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중인 요양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② 준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 명세서나 요양 명세를 적은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사람에게 내주어야 하며, 요양을 받은 사람은 그 명세서나 영수증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은 당뇨병 환자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당뇨병 관리기기등을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해당 의료기기 판매업소를 “준요양기관”으로 보아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기판매업소는 위임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에 따라 1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구입·사용하는 소모성 재료 및 당뇨병 관리기기를 요양비로 지원 중이며, 품목별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 구입가의 70~90%를 지원하고 있으며,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음.⁵⁾

- 당뇨병 환자가 당뇨병 관리기기등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당뇨병 환자로 등록한 후, ② 병원에서 해당 품목의 처방전을 발급받고, ③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후, ④ 관련 서류를 갖추어 공단지사에 방문·우편·전산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함.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준요양기관은 요양을 받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공단에 요양비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지급이 청구된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준요양기관에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준요양기관의 요양비 지급 청구, 공단의 적정성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① 법 제4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② 법 제4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업소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⑧ 요양비의 지급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비의 지급 기준·절차·방법 및 의약품판매업소 등의 등록 기준·절차·취소와 그 밖에 요양비 지급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별표 6] 요양비 지급기준(제8조 관련)에서 개별항목별로 지원수준을 규정함.

<1형 당뇨병 환자 요양비 지원내용>

구분	품목	급여내용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혈당측정검사지	900원/일 당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및 인슐린주사바늘	당뇨유형 따라 일당 900~2,500원 차등 지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11,000원/일 당
당뇨관리 기기	연속혈당측정기	21만원/3개월 당
	인슐린자동주입기	170만원/60개월 당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현재 보건복지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1형 당뇨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높이고 지원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다른 질병과 달리 1형 당뇨병의 경우에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으므로 1형 당뇨병을 다른 질병과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서는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⁶⁾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 기준도 다른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와 동일하게 보건복지부령 이하에서 정하도록 함이 법체계에 부합함.
- 현행 법령에 따라서, 1형 당뇨병 환자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구입·사용하는 소모성 재료 및 당뇨병 관리기기를 요양비로 이미 지원 중인바, 개정안의 경우 기존 규정과 중복되거나 그 실익이 없다고 보아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 현행법령에 따라 당뇨병 환자에 대한 소모성재료 구입 등에 대하여 요양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만 다른 요양비 지급 사유와 달리 특별히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제도운영상 유연한 대응을 위하여 현행과 같이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 대한의사협회

- 현행법령에 따라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현행 보험체계 내에서 소모성 재료나 관리기기에 대한 급여 지원이 되고 있으며, 요양비 지급 관련 구체적 내용은 의료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이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문 의 처
02)6788-5503